

‘중요정보고시’ 개정 및 ‘표시·광고 통합공고’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알려주는 ‘통합공고’를 마련·시행하였다.

금번에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는 제5차 개정으로서 총 3개 분야 28개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거나 중요정보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개 분야 4개 업종(자격증 분야, 전화정보서비스업종,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종, 토지분양업종, 렌탈서비스업종)을 추가 지정하였다.

둘째, 광고대상 중요정보항목 중 광고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피해보상기준 등 피해의 사후구제를 위한 항목으로서 대부분 표시대상 중요정보에도 해당하는 항목으로 표시 의무사항만 규율하여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충분하므로, 광고의 성격에 부적합한 일부 항목(1개 분야 6개 업종)은 삭제하였다.

셋째, 개정전에는 중요정보의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포장, 용기, 라벨, 태그, 사용설명서, 사업장 표지판 등 표시매체 중 2개 이상의 표시매체에 표시한 경우 고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상품·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장소가 다를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시장소를 구체화하였다. 예컨대 상품권의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의 경우, 상품권면 또는 첨부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넷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되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이 폐지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고시내용을 이에 맞춰 개정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를 의무화한 각종 규정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표시·광고상의 ‘통합공고’를 최초로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동 개정고시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홍보·교육 등 적응준비를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06. 4.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통합공고는 각종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내용들을 모아서 사업자 및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알려주는 것이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05. 12. 1.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2005. 11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5년 11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 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5년 11월중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

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5. 12. 1. 현재 302 개로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5. 12. 1. 현재 700 개로 전월 대비 1개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5. 11월중 5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4 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5. 12. 1. 현재 1,002개로 전월대비 1개사가 증가하였다.

〈2005. 11월중 계열사 변동내역〉

기업집단	2005. 11. 1.	편 입				제 외							증감	2005. 12. 1.
		회사 설립	지분 최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자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1개)	302	2	-	-	2	-	-	-	-	-	-	2	2	302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 (55개)	1,001	3	2	-	5	1	-	1	-	-	2	4	1	1,002

〈2005. 11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5개사

◆ 제외 : 4개사

기업 집 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현 대 자동차	(주)파텍스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회사설립	-	-	-
케이티	(주)케이티렌탈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렌탈	"	한림창업투자(주)	금융투자	기타 ¹⁾
				(주)백셀	제조업	" ²⁾

1) 한림창업투자(주)의 유상증자(05.10.6.)시 1대주주였던 「케이티」의 계열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이 참여하지 않아 「케이티」와 관련 없는자가 1대주주가 되고 「케이티」측은 2대주주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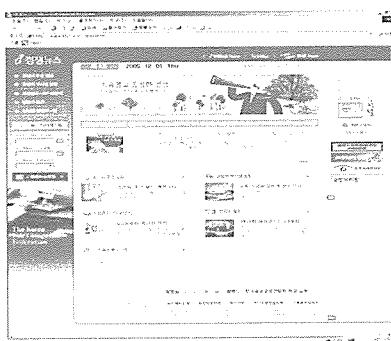
2) 한림창업투자(주)가 기업집단 「케이티」로부터 계열제외 됨에 따라 한림창업투자(주)가 지배하고 있던 (주)백셀도 기업집단 「케이티」로부터 계열제외 됨.

● ● ● ● ● ● ●
공 · 정 · 위 · 업 · 무 · 활 · 동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현 대 백화점	(주)씨씨에스	종합유선방송사업	지분취득	-	-	-
	(주)충북방송	"	-	-	-	-
대 성	(주)가하홀딩스	부동산관련업	회사설립	-	-	-
에스티 엑 스	-	-	-	(주)포스	여행알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합병
태 광 산 업	-	-	-	태경물산(주)	섬유제조	청산종결

Open

“i 경쟁뉴스”



경쟁관련 종합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공정경쟁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뉴스레터 서비스인『i 경쟁뉴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뉴스 다이제스트’는 공정경쟁 활동과 관련된 소식을 찾아보기 위해 일간 신문이나 전문 매거진 등 온·오프라인을 일일이 검

색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공정경쟁 관련 소식을 한 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 주간 일정’, ‘공정위 부서별 동향’, ‘자율준수-CP라운지’, ‘(한국공정경쟁)연합회활동’, ‘심판결 팔로우-업’ 등 공정경쟁활동과 관련된 소식을 종합함으로써 수신자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i 경쟁뉴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은 『i 경쟁뉴스』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 하시거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해진 『i 경쟁뉴스』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